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I.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1932호,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

II.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검토

1. 제안이유

- 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증가하여 2024년 수입·지출계획이 변경됨
-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2023년 결산 결과 '기타수입(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당초 123백만원에서 297백만원으로 174백만원 증가하여,
2024년도 수입계획상 '예치금 회수' 등 411백만원 증액함
 - 증액사유 : '23년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174백만원)하여 기타수입('24년 목표 모금액)을 당초 100백만원에서 330백만원으로 230백만원 증액, 이자수입을 3백만원에서 11백만원으로 8백만원 증액, 예치금회수를 125백만원에서

298백만원으로 173백만원 증액함

나.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 금액 등이 당초 227백만원에서 638백만원으로 411백만원 증액(180.7%) 되었음

- 변경사유 : '23년 목표 모금액을 초과 달성하여 예치금을 당초 209백만원에서 599백만원으로 390백만원 증액, '고향사랑의 날' 행사 참가 등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항목 및 사업비 30백만원 편성, 위원회 운영비 등 간소화로 기금관리비 당초 18백만원에서 9백만원으로 9백만원 감액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장/관/항/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27	638	411	180.7
세외수입	103	341	238	231.6
경상적세외수입	3	11	8	
이자수입	3	11	8	
공공예금이자수입	3	11	8	290.2
임시적세외수입	100	330	230	
기타수입	100	330	230	
기부금수입	100	330	230	23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5	298	173	138.7
보전수입등	125	298	173	
예치금회수	125	298	173	
예치금회수	125	298	173	138.7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정책/단위/세부/편성목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합 계	227	638	411	180.7
재무활동	209	599	390	186.4
보전지출	209	599	390	
여유자금 예치	209	599	390	186.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30	30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30	30	
제도홍보(사무관리비)	-	30	30	
행정운영경비	18	9	△9	△47.3
기본경비	18	9	△9	
기금관리비(사무관리비)	18	9	△9	△47.3

Ⅲ. 검토의견

-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1억 7,300만원)를 포함한 수입과목의 수입계획액 증가 등을 사유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도 여유자금 예치(3억 9,000만원) 등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증·감하여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1)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지출계획은 3개 정책사업의 지출계획액을 증·감요청한 것으로 「지방기금법」에 따라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입계획은 ①'23년도 결산결과 목표 모금액을 초과달성하여 '24년도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 수입을 당초보다 1억 7,300만원 증액한 2억 9,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 ②'24년도 목표 모금액 즉, 기부금수입도 조기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여 당초보다 2억 3,000만원 증액한 3억 3,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고, ③예치금과 기부금수입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공공예금이자수입도 당초보다 800만원 증액한 1억 1,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한 것임
- 수입계획과 연동된 지출계획의 경우에는 ①정책사업인 재무활동은 여유재원을 예치함에 따라 여유자금 예치는 당초 지출계획(2억 900만원)보다 3억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9,000만원을 증액하여 지출계획하는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보다 186.4% 증가되어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다른 정책사업인 ②**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은 매년 9월 4일 개최되는 ‘고향 사랑의 날’ 행사 참여 비용 등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한 것으로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보다 100% 증가되어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 또다른 정책사업인 ③**행정운영경비**는 당초 지출계획보다 △900만원을 감액하여 지출계획하려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당초 정책사업 지출금액보다 △47.3% 변동되는 것으로 의회로부터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

〈표 3-1〉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

정책사업 / 단위사업 / 세부사업	당 초 (A)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B)	증 감 (C=B-A)	증 감 륜 (D=C/A)
지출합계	227	638	411	180.7
재무활동	209	599	390	186.4
보전지출	209	599	390	186.4
여유자금예치	209	599	390	186.4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30	30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	30	30	-
제도홍보(사무관리비)	-	30	30	-
행정운영경비	18	9	△9	△47.3

※ 자료근거 :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고향사랑기금 지출계획,
②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24. 5.27) 재구성

-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청한 동 기금의 지출계획은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사용목적²⁾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3회계연도 결산결과 여유재원이 증가하여 **예치금회수** 즉,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계획액을 당초(**1억 2,500만원**)보다 **1억 7,300만원** 증가한 **2억 9,800만원**으로 증액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이나,
 - 지난 5월 27일 제출된 의안³⁾의 “주요내용”에는 '23회계연도 기금 결산의 내용까지 기재하고 있어 동 변경안에 적시된 수입과목과 수입계획액을 파악하는데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의회로부터 심사·의결받고자 제출되는 의안은 해당 사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작성하고, 부가적인 설명('23회계연도 결산 등)은 “주요내용”이 아닌 “참고사항” 등으로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가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의거하여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3) 「2024년도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1932, 제출일 '24. 5.27)